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22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김기현 · 안철수 · 김 건
김미애 · 박성민 · 최은석
서일준 · 추경호 · 김정재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

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분석보고서(이하 “북한인권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발간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실태”를 “실태(북한인권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u>실태</u> 2. ~ 5. (생략) ② (생략)	제6조의2(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분석보고서(이하 “북한인권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발간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국회 보고) ① ----- ----- ----- ----- -----. 1. -----<u>실태</u>(북한인권보고서를 포함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